

위장폐업문제 사실상 구제불능

노동부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집계된 폐업사업장 수는 모두 2백98개로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무려 256%나 증가했다.

이같은 폐업증가추세는 87년 이후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조 활동 활성화와 무관치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수많은 폐업사업장 노동자들이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다.

그러나 현재 자본가의 자의적 폐업을 막을 법제도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라 자본가가 일단 폐업해버리면 위장폐업이 인정되진 아니건 폐업을 철회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해 자본가의 횡포를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장폐업 관련 판례에서 쟁점은 노조파괴를 위한 폐업이 위장폐업이나 아니냐에 국한돼 있다.

장에 대해서는 "설령 병원경영에서 흑자를 낸 것이 사실이고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했다해도 경영주의 의사에 반하는 병원재개명령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노위결정이,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사업주의 불이익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올 6월22일 남천병원의 폐업·해고는 "노조활동기피가 결정적 원인"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노위결정을 뒤집고 병원이 사업

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조업재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양전자노조(위원장 백다례)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회사측은 폐업 이전에 이미 (주)우림이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비밀리에 안양전자를 하청화시키고 폐업준비를 해왔다는 것. 회사측은 강원도 횡성에 생산공장인 우림전자를 세워 관리자를 모두 빼돌리고, 어느 날부터는 생산품이 우림전자명의로 출고되고 있었다고 백다례씨는 주장한다.

이처럼 타지역에서 별도법인으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노동위는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동양경제신문 폐업문제의 경우 서울지노위는 작년 10월21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했으나 노조측의 폐업철회요구는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판례로 본
노동법

일단 폐업하면 그만, 폐업방지법 제정돼야 뻔한 위장폐업에도 '철회'명령 한건도 없어

그러나 위장폐업이 인정되고 조업재개명령은 할 수 없다는 점은 어느 경우나 동일해 폐업철회명령은 한 것도 없는 형편이다.

위장폐업 여부가 논란이 된 대표적 사례로 부산의 남천병원 폐업문제를 들 수 있다.

남천병원 사례는 위장폐업 판단기준을 '영업행위의 계속성'에 둔 부산지방법노동위원회와 '폐업이유의 부당성'에 둔 중앙노동위원회간에 상이한 판정을 유발시켰다.

작년 10월31일 중업원 1백77명 전원해고와 함께 폐업한 남천병원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낸 노조(위원장 이진희)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12월9일 "병원측이 영업을 계속하거나 별도 병원을 설립했다는 증거가 없어 위장폐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당해고철회요구 등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 법률상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정하고, 또한 노조측의 "병원측의 폐업이유인 적자경영주장은 병상증설신청을 볼 때 허위로 폐업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는 주

을 재개할 경우 피해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위장폐업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도 '사업주가 조업을 재개할 경우 복직시키라는 정도여서 부당한 폐업을 철회시키도록 하는 강제성은 없고 사업주 자의대로 움직이면 그만인 결정에 불과하다.

한편 부산지노위가 위장폐업의 판단근거로 삼은 '영업행위의 계속성'문제는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2일자로 폐업한 경기도 군포 안양전자의 경우는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폐업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심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결정했다.

안양전자(사장 한정진)측은 노동위에서의 진술에서 "부당폐업이 판정돼도 이 근로자들과는 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부당한 주장을 근거로 지노위는 지난 4월21일, 중노위는 7월27일 각각 "피신청인(회사측)의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

"폐업철회나 기업재개명령은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주의 썬전자 세일나염, 서울 장우물산 녹십자 병원 제주 새한병원 인천 세창물산 신림섬유 부천 원방 부산(주)동진 등등 다수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위장폐업철회투쟁을 벌였으나 법률은 뚜렷한 구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판례로 표현된 법적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고 노동자들은 거의가 생존투쟁을 잃었다.

판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노동자들은 자본가가 '혹시'조업을 재개하기만 기다려야 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률가들은, 위장폐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니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에 폐업방지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별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은숙 기자)